

의안번호 제164호

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건설도시국장
제출연윌일	2022. 10. 6.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164호

제출연월일: 2022. 10. 6. 제 출 자: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위원들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4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연임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 연임 제한을 신설함.(안 제4조) 나. 위원회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범위를 정함.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참고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없음

3) 규제심사 : 비대상

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) 예고기간 : 2022. 9. 7. ~ 2022. 9. 27.(20일간)

나) 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토지정보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2항 중 "3년으로 한다."를 "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제8조 중 "출석할 때에는"을 "출석하거나 심의한 때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소	관	부	서	성		명
입 안 자	토ス] 정보	과 장	०]	은	영
	토 ス] 정 책	팀 장	٥]	정	범
	담	당	자	박 (74	준 6-56	성 14)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의 위촉) ① (생략)	제4조(위원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	2
3년으로 한다.	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
	있다.
제8조(수당 등) 소속직원이 아닌 위	제8조(수당 등)
원이 회의에 <u>출석할 때에는</u> 예산의	출석하거나 심의한 때
범위에서 「논산시 각종위원회 설치	<u>에는</u>
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	
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
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 - ㅇ 해 당 없 음
- 2. 비용추계결과
 - 가. 추계의 전제
 - ㅇ 해 당 없 음
 - 나. 추계결과
 - ㅇ 해 당 없 음
- 3. 작성자

토지정보과장 이 은 영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

- 제25조(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0. 6. 9.>
- 1.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2.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3.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4.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5.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6.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74조(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) ①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②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 청장이 된다. 이 경우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.
- ③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 8. 12. 18.>
- 1.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
- 2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- ④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 시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